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25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 최기찬, 김성준, 김영철, 김인제,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봉양순,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홍국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저출생이 심각한 가운데 소아과 폐과 선언, 소아과 대란 등 최근 소아청소년의 의료환경은 오히려 열악한 현실임.

○ 이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소아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의료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의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서울 전 지역에서 아동들이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체계확충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복리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을 위한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의료응급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